

의안 번호	2019	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1. 1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1. 1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5.(월)

2. 제안이유

- 인구정책사업을 하는 기업·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부적정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 규정 내용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경비지원 사업대상 인용 조문 정정(안 제4조)
- 나.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9조, 제10조 ~ 제13조까지)
- 다.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, 제12조)

4. 근거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경비지원에 관한 부적정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위원회 규정순서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
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